

## 공무직근로자(통계조사분야) 공개채용 공고

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경상조사 및 연간·특별조사 전반을 수행할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. 4. 17.  
호남지방통계청장

### 1. 채용개요

#### ○ 채용인원

직종	채용부서	채용인원	계약방법	채용예정	임금	비고
공무직 근로자	강진사무소	1명	근로계약 (만 60세 정년)	2023. 5.30.(화)	기본급(1호봉): 1,808,650원 정액급식비: 140,000원 표본관리비: 150,000원 (법정수당 및 명절휴가비 별도)	

- 담당업무: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조사 업무 상시 수행(경상,연간조사 및 특별조사)

### 2. 채용기간 및 담당업무

#### ○ 채용기간

- 수습기간 : 채용일 부터 (3개월) ※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
- 정규임용 : 수습기간 이후 근무평가결과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임용

#### ○ 담당업무

담당업무	주요담당업무
경상조사 및 연간·특별조사 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현지 조사업무 수행 (순천사무소 관할지역내 조사업무)</li><li>· 조사구요도, 명부 수정보완</li><li>· 방문조사 조사표 작성</li><li>· 조사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시스템 입력</li><li>· 기타 조사관련 지시사항 처리 등</li></ul>

### 3. 채용방법

#### 가. 전형별 점수 기준

1차 서류전형			2차 면접전형
자격증	기타점수	경력, 자기소개서 등	면 접
5	5	90	100

※ 국가유공자 관련 가점은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
#### 나. 1차 서류전형(100점)

○ 서류전형 세부 평가 기준

- 통계조사경력,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 점수(90점)
- 자격증 점수(5점)

자격증	점수
- 사회조사분석사 1급,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보안기사	5
- 사회조사분석사 2급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 활용능력1급, 전산회계운용사 1급	3
-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자계산기기능사, 전산회계운용사 2.3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, 워드프로세서	1

※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

- 기타 점수(5점)

항 목	점 수	내 용	비 고
저소득층	2	- 기초생활수급자 - 차 상 위 계 층 - 1부모가족 세대주 ※ 관련 증빙서류 제출	※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합계 최대점수는 5점까지 부여가능
다자녀	2	- 다자녀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) ※ 주민등록등본 제출	
북한이탈주민	2	- 북한이탈주민 ※ 북한이탈주민 확인서	
장애인	3	- 장애인등록증소지자	

○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기준

- 취업지원 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
- 정성평가 점수 > 기타 점수 > 자격증 점수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최대 인원을 선발

○ 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 기준

〈채용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선발인원〉

채용인원	서류전형 선발인원
1명	5배수
2명	3배수
3명 이상	2배수

다. 2차 면접전형(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- 면접장소: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시 확인

라.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가점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

5점	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</li> <li>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</li> <li>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</li> <li>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</li> <li>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</li> <li>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</li> <li>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</li> <li>-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</li> </ul>
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, 제24조 및 고엽제

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

5점	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</li> <li>-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</li> <li>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</li> <li>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</li> <li>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</li> <li>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</li> </ul>

**마.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**

-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- 면접(2차)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**바. 추가 합격자 선정 기준**

-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면접시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**4. 응시 자격요건**

**공통요건**

-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  - 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
  - 통계청 취업규칙 제56조(정년: 채용 해당년도 만 60세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  - 이중 취업(겸업) 금지
- 채용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·퇴근 및 출장지역 업무 수행 가능한 자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저촉되지 않는 자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 □ 우대요건

- 관련분야 근무경력 (통계조사, 통계기획·분석, 통계자료처리등)
  -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 - ※ 저소득층의 범위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  - ※ 다자녀보육가구 :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
  - ※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에  
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, 제24조 및 고엽제  
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

## 5. 심사일정

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2023. 5. 10.(수) 11:00 이후
-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: 1차 합격자 발표일 공지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3. 5. 18.(목) 18:00 이전 공지 및 개별 문자 안내
  -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(<http://kostat.go.kr/office/hnro/index.action>) 채용정보에 공고

## 6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4. 17.(월) ~ 2023. 5. 1.(월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E-mail: naga0163@korea.kr
  - 방문 접수는 평일 09:00~18:00 내에 접수
  -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  - E-mail 접수는 마지막 날 18:00 내에 접수
  - 접수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반영되지 않음
  - 접수장소 : 아래 참조

담당자	주 소	전화번호
조사지원과 나선희	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(동천동 584) 1층 통계청 고객지원실	전화: 062-370-6022 naga0163@korea.kr

## 7. 제출서류

- 필수 제출 서류: **자필서명 필수(미 서명시 접수 불가)**
  - 응시원서 1부(붙임1 참조)
  - 자기소개서 1부( 붙임2 참조)
  -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붙임3 참조)
  - 통계청 공무원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(붙임5 참조)
- 추가 제출 서류(해당자에 한함)
  -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호남지방통계청 경력 제외
   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
    -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경력에 한 함.
  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,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, 제24조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운전면허증 1부(해당자에 한함)
- **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지자체 및 통계조사관련** 표창 내역 1부(해당자에 한함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(붙임4 참조)
 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(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 기술자력증, 국가기술자격취득사상 확인서등) 제출 제외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  - 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시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## 8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결격사유 유무 정보 확인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최종합격 취소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
- 문의사항: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나선희(062-370-6022)





【붙임2】

## 통계청 공무원근로자 자기소개서

※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, 개인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문구 자제(출신학교, 출생지, 친인척 관계 등)

직 종	통계조사관	지원부서	순천사무소	응시번호	
<b>【지원 동기】</b>					
<b>【본인의 강점 및 단점】</b>					
<b>【과거 어려움 극복 경험 및 포상 이력등】</b>					
<b>【향후 입사 후 포부(목표)】</b>					



【붙임4】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호남지방통계청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공무원근로자 채용 및 관리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 / 해당 항목에 “√” 또는 “○” 표시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 <input type="checkbox"/>	5	주민등록표 등·초본(행정안전부) <input type="checkbox"/>
2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(고용노동부) <input type="checkbox"/>	6	장애인증명서(보건복지부) <input type="checkbox"/>
3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보건복지부) <input type="checkbox"/>	7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 확인서(국가보훈처) <input type="checkbox"/>
4	한부모가족증명서(여성가족부) <input type="checkbox"/>	8	취업지원대상자증명(국가보훈처)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(□주민등록: \_\_\_\_\_ - \_\_\_\_\_)

### 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3 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대상자    본인

성   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## 통계청 공무원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통계청의 공무원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통계청 「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」 제1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,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, 불이익에 대해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통계청 「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」

제11조(자격요건) ① 채용권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를 공무원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한다.

####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23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
성      명

(서명)

호남지방통계청장      귀하